



전 주 지 방 법 원 담 보 제 공 명 령

사 건 2022카단 채권가압류

채 권 자 주식회사 ()
대전)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
전종필 사무소(만성동 1366-9)(송달영수인:전종필)
대표자 사내이사 김

채 무 자 주식회사 ()
전주시)
대표자 사내이사

제 3 채 무 자 법인 병원 ()
전주시)
대표자

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289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.
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증금액(보험금액)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2022. 8. .

판사 정



1. 진술최고 신청 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 시까지 진술최고 통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최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므로, 담보제공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을 보관금(진술최고비용)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2. 위에서 정한 기일 안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정보가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므로 별도로 공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

전 주 지 방 법 원

결 정

사 건 2022카단 채권가압류

채 권 자 주식회사 ()

대전)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

전종필 사무소(만성동 1366-9)(송달영수인:전종필)

대표자 사내이사 김

채 무 자 주식회사 ()

전주시)

대표자 사내이사

제3채무자 법원 병원 ()

전주시)

대표자

주 문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
청구채권의 내용

청구금액 금 7,218,750 원

이 유

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
회사 증권번호 제100-000- 호)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2. 8. .

판사 정



- ※ 1.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.
2.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